

2020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20년도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담 기관에서는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신규 신청 및 재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지원대상
2. 접수안내
3. 신청조건
4. 첨부서류
5.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6. 유의사항
7. 문의

※ 심사 진행 절차



1. 지원대상

- 1) **신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 2) **재인증**: 2015년도에 인증받은 교육연수기관(※지원필수) 또는 현재 정지 상태인 기관

참고사항

- 신규: 학회 가입 시기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재인증: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변경됩니다.

2. 접수안내

- 1) **기간**: 2020년 9월 18일(금) 10:00 ~ 10월 16일(금) 17:00
- 2) **심사비**: 100,000원
- 3) **절차**



- 4) **접수 방법 및 심사비 납부 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심사비 결제(심사비 미납시 심사 제외)

- (1) 2020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접수하러 가기(클릭)
- (2) 2020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재인증]** 접수하러 가기(클릭)

참 고 사 항
- 교육연수기관 심사는 연 2회로 상반기 1~2월, 하반기 9월~10월 진행됩니다. - 기관 회비(100,000원)와 심사비(100,000원)는 모두 납부되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심사비(100,000원)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조건

1) 개인(일반)기관

① 기관회원 ㉠ 본 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1급 전문상담사 ㉠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 매년 회원 유지 요건 충족을 통해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수련감독자 ㉠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는 수련감독자 역할이 가능합니다.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1) 기관 대표자 조건	1급 전문상담사
(2) 기관 시설 조건	①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대 계약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기관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등등)
(3)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① 대표자 포함 2인 ② 수련감독자는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 1곳을 포함하여 <u>교육연수기관 3곳까지 수련감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u>(단, 공공기관 대표자는 제외). * 수련감독자는 기관에 고용되지 않아도 됩니다.
(4) 제출서류 관련	㉠ 제출하는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시, 계약기간 중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도 동일함)
(5) 기타	①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2) 공공기관

① 기관회원 ㉠ 본 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1급 전문상담사 ㉠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 매년 회원 유지 요건 충족을 통해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수련감독자	
---	--

㉓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는 수련감독자 역할이 가능합니다. 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 를 의미합니다.	
(1) 기관 대표자 조건 (①, ② 중 택1)	① 1급 전문상담사(수련감독자)이거나 ② 대표자가 박사학위 취득하고 분과·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기관 시설 조건	①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함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3)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①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 소지자: 대표자 포함 2인 ②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 소지자가 아닌 경우: 1급 전문상담사 2명 ③ 수련감독자는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 1곳을 포함하여 <u>교육연수기관 3</u> 곳까지 수련감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대표자는 제외). * 수련감독자는 기관에 고용되지 않아도 됩니다.
(4) 기타	①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

1) 일반기관 (각 1부)

-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 ② 기관 소재지 등기부 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 ③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
- ④ 대표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⑤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⑥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 취득한 상담 관련 자격증)
- ⑦ 정관(운영규정)
- ⑧ 조직표
- ⑨ 장단기 사업계획서

※ 첨부서류 ④, ⑤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검색**으로 입력하면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자격증 사본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기관 (각 1부)

-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 ② 대표자의 박사학위 증명서
- ③ 대표자가 관련 기관에 임용된 근거 서류 : **1년 이상의 임용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 ④ 수련감독자 2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 취득한 상담 관련 자격증)
- ⑥ 정관(운영규정)
- ⑦ 조직표
-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
-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
- ⑩ 분과학회회장 또는 지역학회회장의 추천서(첨부2. 분과지역학회장 추천서 참고)

※ 첨부서류 ⑤는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검색**으로 입력하면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자격증 사본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사 항

- 제출서류 미비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 정관(기관 운영 지침),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는 제공하는 양식이 없습니다.
- 지원서와 첨부파일은 접수기간 동안에 수정 가능합니다.

5.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1) 결과발표

- (1) 일시: 2020년 11월 2일(월) 오후 2시
- (2) 확인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 - 전문상담사(상단 메뉴) - 교육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인증(신청)에서 심사결과 확인

2) 인증서

- (1) 발급 : 본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로그아웃 밑에 연수기관 인증서 클릭 -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 (2) 유효기간
 - ① 2020년 11월 01일 ~ 2021년 2월 28일
 - ② 1년 단위로 인증 기간이 표시됩니다.
 - ③ 연회비를 납부해야 출력이 가능하며, 매년 3월 1일자로 새로 발급됩니다.

참 고 사 항

- 불합격 기관에게 대표자 메일과 기관메일로 심사 불인증 사유가 안내됩니다.

6.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유의사항

1) 연회비

- (1) 연회비는 매년 납부해야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 기간: 매년 2월 28일까지(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발급 불가)
- (3) 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납부 클릭 > 납부

2) 재인증: 5년마다 재인증 신청해야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사유

(1) 대표자의 수련감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윤리위 반 등

- (2) 재인증 실패: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 (3) 기관 주소(소재지), 대표자,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위원회에 적발되거나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 (4) 기관 대표 변경, 강사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교육연수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와 같은 정지 사유로 회원 보호 차원에서 교육연수기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 연회비 미납: 교육연수기관 인증 기간은 5년이지만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관회원이 정지됩니다.

4)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 교육연수기관의 주소,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대표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1) 변경 내용 및 제출 서류

① 일반(개인)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변경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대표자 변경	재인증

② 공공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변경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 관련 공문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대표자 변경	대표자 임용근거 서류, 박사학위증명서 각1부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교육연수기관 정보 수정 요청

5)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문의 02-875-5830(내선번호 2번) / 홈페이지-커뮤니티-Q&A 기관회원 관련 문의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